

2026년 토목과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사개요

○ 실시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 2026년 연간 감사기본계획
- 2026년 토목과 종합감사 실시 계획

○ 감사기간: 2026. 4. 15.(수) ~ 5. 8.(금)(기간 중 16일)

○ 감사대상: 토목과

○ 감사범위: 2023. 1. 1. ~ 2025. 12. 31.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사항

○ 감사인원: 5명(감사팀장 외 4명)

○ 감사방법: 서면감사(전자문서시스템 활용) 및 필요시 현장 실지감사

○ 감사 중점사항

- 직원 복무 및 비공무원 채용 절차·관리 적정 여부
- 예산·회계처리 적정 여부
- 공사 시행 및 준공처리 적정 여부
-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 보도환경개선사업 운영 적정 여부
- 도로굴착복구 관리 및 도로점용 허가 적정 여부
-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관리 적정 여부
- 기타 토목과 추진업무 점검 및 제도개선·우수사례 발굴 등

II. 토목과 현황

○ 직원 정·현원 대비표

(단위: 명 / 기준일: 2026. 4. 1.)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3	1	7	13	6	6
현 원	28	1	7	9	5	6

※ 정원 외: 7명(공무직 6명, 기간제근로자 1명)

○ 연도별 예산현황 (최종예산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예산액		27,154,486	24,432,085	15,031,047
일반회계	소 계	25,596,286	23,100,466	13,431,047
	국 비	700,000	616,520	25,000
	시 비	2,921,600	2,331,000	749,600
	구 비	21,974,686	20,152,946	12,656,447
도로굴착복구기금		1,558,200	1,331,619	1,600,000

○ 도로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계	교량	터널	방음터널	육교	지하 보차도	고가 차도	복개 구조물	급경사지	민간 시설물
35	11	1	2	5	10	1	2	2	1

○ 도로조명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가로등	보안등
16,389	10,449	5,940

○ 장비 현황

(단위: 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덤 프	4.5톤	1	아스팔트 컷타기	1.8마력	1
포 터	1톤	2	콤 팩 터	소형	2
모 닝	5인승	1	소형제설기(스티가빌라)	DMU-14	19
아이오닉 5 EV	5인승	1	자동식 소형살포기	20kg용	64
제설차(유니목)	2.5톤	2	염화칼슘 살포기	중대형	16
다목적 도로관리차	8.5톤	2	염화칼슘 살포기	1톤(소형)	20
스키드로우더(바브켓)	2톤	1			

III. 감사 결과

1. 총 평

- 이번 감사는 ‘2026년 연간 감사기본계획’ 및 ‘토목과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토목과에서 2023. 1. 1.부터 2025. 12. 31.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고 미흡한 업무처리사항은 시정하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토목과는 도로 이용 편의 증진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환경개선공사, 도로굴착 및 복구, 도로조명시설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다수의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제설대책 수립, 장비·자재 운영 및 제설작업 체계 유지 등 재난·안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음.
- 다만, 일부 직원들의 경우 관련 법령·지침 미숙지, 업무 착오 등으로 업무처리의 미비점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음.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 ▶ 공사 분야에서는
공사 기본방침 결정 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및 준공 검사공무원 지정기준 미준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보험료의 정산 부적정, 안전 관리자의 업무수행일지 미작성,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임의 변경 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지정여부 미검토 등의 사례가 있었고,

▶ **도로굴착 분야에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도로점용(굴착, 복구) 허가 부적정 사례, 준공 업무 처리 및 도로굴착복구 정기하자검사 업무 소홀 사례를 확인하였음.

▶ **채용,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산정 및 정산 절차 부적정, 회계관계공무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및 회계처리 시 증빙서류의 미비 등 회계 처리 절차 미준수 사례가 있었고,

▶ **복무 및 기타 분야에서는**

공가 사유의 부적정, 특별휴가 사용 절차 미준수, 보행환경개선계획 미수립 및 검토 소홀 사례 등이 지적되었음.

○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해당 부서장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은 물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원)

합계		시정요구(금액)			(행정상) 주의요구
건수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회수	환급	
22	**,***,***	5 (**,***,***)	4 (**,***,***)	1 (**,***,***)	17

3. 분야별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계	공사	도로굴착	채용	예산·회계	복무 및 기타
22	8	4	2	4	4

Ⅳ. 처분 요구사항 일람표

연 번	분 야	지적내용	처분요구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방법	금액(원)
1	공사	공사 기본방침 결정 사무전결처리 규칙 미준수	주의요구	-	-
2		검사공무원 기준 미준수	주의요구	-	-
3		준공검사 시 보험료 정산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
5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
6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미이행 및 근무일지 미작성	주의요구	-	-
7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임의 변경	주의요구	-	-
8		주민참여감독자 미위촉	주의요구	-	-
9	도로 굴착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주의요구	-	-
10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부적정	시정요구	환급	***,***
11		도로점용(굴착,복구) 준공 업무 처리 소홀	주의요구	-	-
12		도로굴착복구 정기하자검사 소홀	주의요구	-	-
13	채용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산정 부적정	주의요구	-	-
14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정산 절차 부적정	주의요구	-	-
15	예산 회계	회계관계공무원 겸직금지 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	-
16		회계처리 시 증빙서류 미비	주의요구	-	-
17		재정사항 합의 미실시	주의요구	-	-
18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부적정	주의요구	-	-
19	복무 및 기타	특별휴가 사용 절차 미준수	주의요구	-	-
20		공가 사유 부적정 및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시정요구	회수	***,***
21		가로등시설물 순찰점검 등 사무전결처리 규칙 미준수	주의요구	-	-
22		보행환경개선계획 미수립 및 검토 소홀	주의요구	-	-

* 회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의 원인에 의하여 잘못 지급된 금품 등을 반환받음.

* 환급: 착오 등의 원인에 의하여 과다 또는 의무없이 납부된 금품 등을 되돌려 줌.

V. 분야별 지적사항

공사 분야

1 공사 기본방침 결정 사무전결처리 규칙 미준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1] 각 과 공통 전결규정에 따르면 공사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비 3억원 이상인 경우 재무과장의 협조를 얻어 부구청장 전결로, 사업비 3억원 미만인 경우 재무과장의 협조를 얻어 국장 전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사업비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건의 기본방침 결정을 소관 국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공사 기본방침 결정 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검사공무원 기준 미준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검사자의 지정)에 따르면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 같은 규칙 [별표5]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금액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주관과 주관팀장 1명, 7급 이하 1명으로, 5천만원 미만의 검사자는 주관과 7급 이하 2명으로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공사 *건에 대한 준공검사조서 작성 시 검사자를 1명만 지정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공사의 준공검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3 | 준공검사 시 보험료 정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입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¹⁾의 실제 납부금액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고,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 ① '○○공사(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시 사업주 부담금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금까지 포함하여 *,**,***원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 ② '20**년 ●●공사(연간단가)'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사업주가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원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③ '20**년 ◎◎공사(연간단가)'의 준공검사 시 교통안전원 관련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원을 초과하여 정산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

1)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회수)**

- 토목과장은 ① 과다 지급한 보험료 **,***,***을 회수 및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② 앞으로 공사 기성 및 준공 정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 실제 납입금액을 확인하고 정산·지급하는 등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수 조치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 ① ‘◇◇공사(20**년)’ 시행 시 안전물품내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중복 계상하여 **,***,***원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 ② 아래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 ▶ 구매 물품 사진을 다른 공사의 증빙서류에 중복 첨부하고,
 - ▶ 물품거래명세서와 지급대장 간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 ▶ 물품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상 금액이 상이함에도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채 접수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회수)

- 토목과장은 ① 중복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을 회수 및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② 앞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수 조치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정산), 제54조(추가 조정 등)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공사(20**년)' 시행 시 구조검토비를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원 초과하여 정산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회수)

- 토목과장은 ① 과다 지급한 안전관리비 *,***,***원을 회수 및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② 앞으로 안전관리비 정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수 조치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에 따라 도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공사(20**년)' 시행하면서 도급비가 50억 미만임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배치 및 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공사 시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6절(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 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 토목과에서는 '20**년 ■■공사(연간단가)' 시행 시 관급자재(조합페인트)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사급자재로 변경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공사 시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8 주민참여감독자 미위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공사(20**년)' 외 1건의 공사 시행 시 주민참여감독자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공사 시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분야

9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3항에 따르면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회의)제2항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기본계획심의를 위해 하반기에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간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한 사실이 있고, 20**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에 전년도 기금 결산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0 도로점용(굴착, 복구) 허가 부적정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 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제3조(정의) 및 제10조(허가의 신청)에 따르면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 설물에 한한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 하는 공사를 뜻하며,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서를 영 [별표1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 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에 따르면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 토목과에서는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가 아닌 점용허가 사항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원을 징수한 후, 도로굴착복구 허가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환급]**

- 토목과장은 ① 부당 징수액 ***,***원을 대상자에게 환급 및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② 앞으로 도로점용(굴착, 복구) 허가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환급 조치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11 | 도로점용(굴착, 복구) 준공 업무 처리 소홀

-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및 제73조(원상회복)에 따르면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으면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함.
-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6조(공사의 완료)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준공처리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 토목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도로굴착복구 허가 방문접수 건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확인 신청서 및 준공계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확인을 한 사실(**건)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도로점용(굴착, 복구) 준공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2 | 도로굴착복구 정기하자검사 소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9조(검사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로굴착 복구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실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도로굴착복구 정기하자검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13 |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산정 부적정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그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²⁾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 같은 법 제70조(보수월액)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과세대상 수당인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을 월 보수액에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산정·공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 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에 따르면 공단은 원래 산정 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도의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 근로자가 재채용되자 차년도 3월 급여 지급 시 상계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정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산 · 회계 분야

15 회계관계공무원 겸직금지 규정 미준수

-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 따르면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며,
-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3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 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하고, 다만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분임재무관(과장) 부재 시, 일상경비출납원(주무팀장)이 원인 행위 승인과 지급명령 승인을 겸직한 사실(**건)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예산 집행 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6 회계처리 시 증빙서류 미비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지출의 절차)제2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함.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 같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 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검사자의 지정)에 따라 물품의 제조, 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이행하며,
- 같은 규칙 제13조(산출기초조사서)에 따르면 주관과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일반지출 및 일상경비 집행 시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물품검수조서에 검수자 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건)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예산 집행 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7 재정사항 합의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제1항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함.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토목과에서는 20**년 도로보수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일상경비로 집행하면서 일상경비출납원(주무팀장)의 합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예산 집행 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8 |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의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개선 계획'(구청장 방침, 기획예산과-***** (20**.**.**)에 따르면 우리구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분	단 가	비 고
대면회의	기본 70,000원 초과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한하여 지급
온라인회의	기본 50,000원 초과 20,000원	
서면회의	30,000원	• 서면심의시 지급(심사수당 성격) - 의견서, 심의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 토목과에서는 20**년 개최한 *건의 '▲▲ 심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우리구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복무 및 기타 분야

19 특별휴가 사용 절차 미준수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가족 돌봄휴가를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유·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의2(특별휴가) 및 '노원구 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직기간별 정해진 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휴가를 희망하는 직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문 신청 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 ①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승인하여 특별휴가 사용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②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대상자 제출 공문을 시행하지 않거나 휴가 신청 기간과 실제 사용 기간이 상이함에도 변경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세부내역: [붙임] 특별휴가 세부내역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특별휴가 사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6(공가)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같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 ① 출장 사유에 해당하는 교육 참석을 공가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②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격취득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공가를 허가받아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③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았으나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공가를 사용한 날을 연가보상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회수)**

- 토목과장은 ①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 및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② 앞으로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수 조치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8] 토목과 전결규정에 따르면 가로등시설물 순찰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과장 전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토목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가로등시설물 순찰점검 등 업무처리를 팀장 전결로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가로등시설물 순찰점검 등 업무 처리 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22

보행환경개선계획 미수립 및 검토 소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따르면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도를 점용·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 같은 조례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 개설공사,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등 제1호부터 9호까지의 공사를 시행 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도로관리부서에 사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13조(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시기)에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시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번	공사내용	제출시기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공사 착공 3일전
2	건축공사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허가 신청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 공사	공사 착공 3일전

- ↳ 토목과에서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자체발주공사 시행 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사대상 기간 동안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접수·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 토목과장은 앞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 및 업무협의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VI. 수범사례

1. 상계동 ▽▽-▼▼ ♠♠ 부지 환경정비

☐ 추진배경

- 상계동 ▽▽-▼▼ 일대 오랜기간 고물상 무단점유 및 노후화된 창고의 불법적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생활불편 고질민원 발생

☐ 추진경위

- 고물상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20**. **.
※ 나대지 ***m², 고물상 ***m², 창고 **m²
-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전 검토 용역 시행(교통지도과): 20**. **.
-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도시관리과): 20**. **.
- 정비공사 작업 의뢰(교통지도과 → 토목과): 20**. **.
-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20**. *. *. ~ 20**. *. *.

☐ 추진현황

- 공사내용: 고물상 및 고철물 철거, 아스콘포장, 경계석·조경석 설치

☐ 추진효과

- 방치된 구유지 확보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수범공무원

- 소속: **과 / 직급: 시설**급 / 성명: C

2. 노원구 지반침하 대응체계 구축(자치구 최초)

□ 추진배경

- 지반침하의 형태, 유형별 원인, 빈도 등을 분석하고 노원구 실정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필요

《노원구 지반침하 발생현황 ('23~'25. 7월)》



○ 지반침하 **원인별** 발생 빈도:

발생원인		발생건수	발생비율
지하 시설물 파손	하수관로	16건	67%
	상수관로	1건	4%
	기타시설물	1건	4%
	소 계	18건	75%
다짐불량		5건	21%
굴착 공사 현장 등		1건	4%
총 계		24건	100%

○ **월별** 지반침하 추이

→ **해빙기 ~ 호우집중기간** 지반침하 발생비율 **79%** (19건 발생)

□ 추진실적

- 지반침하 대응단계 구축(풍수해 단계 준용)

풍수해단계	평시근무	예비보강	보강근무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판단기준	30mm/일 미만강우 예보	대기불안정 집중호우 예상	30mm/일 이상강우 예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홍수경보
지반침하 단계	평시단계			주의단계		
근무인원	○ 토목과 직원 2인			○ 토목과 직원 2인 + 현장기동반 1인		

- 지반침하 현장 조치 기본 매뉴얼 수립
- 대응체계 관련부서 전파 및 직원 대상 교육

□ 추진효과

-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 수범공무원

- 소속: **과 / 직급: 시설*급 / 성명: D